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제12판) 추록

(2026. 5. 기준)

P 403 020번 해설 및 정답 대체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해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 권한쟁의심판(제65조), 헌법소원심판(제71조의2)에 대해서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가처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 가처분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가처분의 필요성과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헌재 2001.4.26. 2000헌사471; 2024.10.14. 2024헌사1250)고 하여 예시설을 취하였다. 본 지문은 출제 당시에는 옳은 지문이었으나, 이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틀린 지문에 해당한다. 정답 ×

P 409 039번 삭제 및 040번 해설 추가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해설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이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래 "법률의 의미는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위헌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존중으로서 당연하므로, 이를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도 적법하나, 개별적 사건에서의 단순한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은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2.12.27. 2011헌바117 등). 정답 ×

P 423 091번 해설 대체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해설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은 제63조 제2항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

P 424 093번, 094번, 095번 해설 조문번호 수정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으로 수정

P 435 132번, 133번 삭제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일방적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최협의의 행정행위로서 전형적인 공권력작용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제도의 보충성원칙으로 인해 먼저 행정쟁송을 거쳐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동조 제3항),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당 재판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헌법재판소는 종래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불허되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1997.12.24. 96헌마172 등),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불허되며, 법 제75조의 환송 구조에 비추어 원행정처분의 병합 심리 및 직접 취소도 제한되거나 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P 440 150번 해설 대체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해설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재판소원을 금지하였으나, 2026. 3.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하고(제1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항). 재판소원이 금지되던 구법 하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절차에 따른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예외적으로 재판헌법소원이 인정되나,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은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되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헌재 2022.6.30. 2014헌마760등), 이와 같은 법리는 개정법의 취지와 의미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여전히 존속한다. 정답 ○

P 441 설문, 153번 해설 조문번호 수정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현 제8항)"으로 수정

P 442 155번 해설 대체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해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금지되던 구법 체제 하에서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및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과 서울변호사협회장의 징계개시신청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9.5.27. 98헌마357). 한편 재판소원이 도입된 개정법 하에서 행정처분의 구제절차는 '행정소송, 재판소원, 환송재판'으로 구조화되었는바, 원행정처분의 독자적 헌법소원은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불허되며, 법 제75조의 환송 구조에 비추어 원행정처분의 병합 심리 및 직접 취소도 제한된다. 정답 ×

P 442 156번 해설 대체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해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금지되던 구법 체제 하에서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는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원행정처분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9.9.16. 97헌마160). 한편 재판소원이 도입된 개정법 하에서 행정처분의 구제절차는 '행정소송, 재판소원, 환송재판'으로 구조화되었는바, 원행정처분의 독자적 헌법소원은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불허되며, 법 제75조의 환송 구조에 비추어 원행정처분의 병합 심리 및 직접 취소도 제한된다. 정답 ○

P 461 221번 해설 대체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해설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정답 ○

P 465 238번 해설 대체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해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 권한쟁의심판(제65조), 헌법소원심판(제71조의2)에 대해서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가처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 가처분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가처분의 필요성과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헌재 2001.4.26. 2000헌사471 : 2024.10.14. 2024헌사1250)고 하여 예시설을 취하였다. 정답 ×